

의안번호	2217873
의 퇴 인	박희승 의원
회 답 일	2026.5.6.
추 계 번호	26C1825

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 (한방임상센터 설치 등)	○ (제2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임상분야의 연구·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 (한방임상센터 설치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
 - 현행법 제11조제1항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한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－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치 권한은 한방임상센터에 한정되며, 해당 센터의 기능도 임상시험 수행에 국한됨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그러나 개정안은 센터 설치 및 운영 여부에 관한 재량 규정이며 현시점에서는 센터의 규모와 수행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'26년 한의임상교육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200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, 연구 결과에 따라 건립 규모 등이 결정될 예정임
 - 보건복지부 문의결과, 한의임상교육연구센터는 첨단 시뮬레이션 인프라를 통해 고위험 임상행위의 숙련도를 쌓는 실전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
 - 건립 시 기존 교육사업¹⁾을 이관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이제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

1)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'26년 예산안은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한e캠퍼스 시스템 운영비에 60백만원, 한의약 인력 양성교육 개발 및 운영 사업에 87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산출내역은 참고자료에 제시함

[참고자료]

□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관련 연구·개발·교육사업의 '26년 예산안 산출내역

<한의학진흥원 운영지원>

◇ 내역사업: 한의학연구성과 확산지원

- 한e캠퍼스 운영: 60백만원
 - 한e캠퍼스 시스템 운영비: 60백만원

<한의학산업육성>

◇ 내역사업: 한의의료기기 실증 및 창업·교육 지원

- 한의학 인력 양성 교육 개발 및 운영: 87백만원
 - 교육 프로그램 : 15백만원×3건('25년 3건)=45백만원
 - 한의학 아이디어 공모전 및 창업 교육 운영 42백만원×1식=42백만원